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00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상혁·최인호·정일영

이소영ㆍ허 영ㆍ이탄희

진성준 • 이재정 • 김홍걸

윤후덕 • 위성곤 • 정성호

조응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, 자동차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.

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2019.08.02.)되고 시행(2020.02.28.)됨에 따라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되면서,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음.

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,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 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 1호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"를 "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수자동차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자동차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자동차"란 「자동차관리	1
법」 제3조에 따른 <u>승용자동</u>	<u>승용자동</u>
<u>차와 승합자동차</u> 를 말한다.	차,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
<단서 신설>	<u>차</u> . <u>다만, 특수자</u>
	동차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
	대여사업에 적용하는 경우에
	한정하여 자동차로 본다.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